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. 10. 8 선고 2015가단7826 판결 [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5. 10. 8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 
가. 이천시 C 임야 463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7) 부분 50㎡ 지상 움막 및 보온덮개 창고 1동을 철거하고,  
나. 위 가항 기재 (가)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 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(무변론 판결)

**판사진화원**

별지